의 안 번 호	: 제	166 호
의 결	2019.	
연 월 일	! (제	회)

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박 상 돈 의원 등 8인
발의연월일	2019년 4월 9일

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박상돈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6 발의연월일: 2019년 4월 9일

발 의 자 : 박상돈, 박형용, 심기보,

육미선, 이상욱, 최경천,

박문희, 이상식

1. 제안이유

○ 「공무원연금법」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이 제정(법률 제15522호, 2018.3.20. 공포, 9.21. 시행)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

○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보상금 지급대상의 "직무"에 대한 인정범위 개정 (제3조 제2항)
 - "공무상 재해인정기준"을 "「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」제5조"로 개정
- 나. 장애와 상해의 기준 개정 (제5조 제1항)
 - "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 제45조에 따른 "장애등급"을 "「공무원 재해보 상법 시행령」 제40조에 따른 "장해등급"으로 개정
- 다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
 - 제1조, 제2조, 제3조제2항, 제8조제1항, 제9조제2항, 제11조, 제12조 제1항, 제13조제3항, 제15조
- 라. 별지 서식의 첨부서류 등 현행화(별지1, 2호)
- 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조례안예고 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9-34호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다. 협 의 :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

마. 비용추계 : 해당없음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제3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"을 "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"로, "사망·상해에 대한 보상금지급"을 "사망·장애·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"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직무" 란 충청북도의회(이하 "도의회"라 한다) 의원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.
 - 가. 회기 중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
 - 나. 「지방자치법」제61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
 - 다.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도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국외출 장을 하는 경우
- 2. 삭제
- 3. "유족"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(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), 자녀, 부모, 손자녀, 조부모를 말한다.

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「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」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제4조제1항제2호의 "장애"란「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」제40조에 따른 "장해등급"에 해당될 경우로 한정한다.

-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청구자"를 "청구권자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본인이나 의원"을 "본인 또는 해당 도의회의원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청구자"를 "청구권자"로 한다.
- 제8조제1항 중 "구좌"를 "계좌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의장"을 "도의회의장"으로 한다.
-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자"를 "사람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의회의원"을 "도의회의원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지방공사청주·충주의료원장"을 "충청북도 청주·충주의료원장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자"를 "사람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의회의원"을 "도의회의원"으로, "의회"를 "도의회"로 한다.
-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사항을 심의한다"를 "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"로 한다.
- 제11조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 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12조제1항 중 "통할 한다"를 "총괄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사고가 있을 때에는"을 "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"으로, "지명하는"을 "미리 지명한"으로 한다.
- 제13조제3항 중 "의거"를 "따라"로 한다.
- 제14조제2항 중 "도"를 "충청북도"로 한다.
- 제15조 중 "위원에 대하여는 「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"를 "위원에게는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"로 한다.

별지제1호서식 중 "구좌"를 "계좌"로,

- "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"를 "「충청북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」"로, "의하여"를 "따라"로,
- "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, 사망경위서 1부"를 "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"로 하고, "그 밖에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"를 추가한다.
- "상기자는"을 "위의 사람은"으로, "지방자치법 제32조의2"를 "「지 방자치법 제34조」"로 한다.

별지제2호서식 중 "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"를

- "「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」"로.
- "의하여"를 "따라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혅 했 개 정 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5 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의 직무상 사망·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1조(목적) -----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---------- 사망·장애·상해 에 대한 보상금 지급-----
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1. "직무"란 충청북도의회(이하 " 의회 "라 한다) 의원이 회기 중 본 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 결이나 의회의장(이하 "의장 "이 라 한다)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직무"란 충청북도의회(이하 "도의회"라 한다) 의원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.
 - 가. 회기 중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나. 「지방자치법」제61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 를 수행하는 경우
 - 다.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나 도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 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
- 2. 삭 제
- 3. "유족"이란 의원이었던 자가 사 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(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) 자녀 또는 부모를 말한다.

2. 삭 제

- 3. "유족"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(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), 자녀, 부모, 손 자녀, 조부모를 말한다.

제3조(보상금 지급대상) ① (생 략) 저	제3조(보상금 지급대상) ① (현행과 같
	음)
② 제1항 각호의 "직무"에 대한 구체 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"공 무상재해인정 기준"에 준한다	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구체적 인정 범위는 「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령」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제5조(장애와 상해의 기준) ① 제4조제1 저항제2호의 "장애"란 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제45조에 따른 "장애등 급"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될 경우에 한정한다.	제5조(장애와 상해의 기준) ① 제4조제 1항제2호의 "장애"란「공무원 재 해보상법 시행령」제40조에 따른 "장해등급"에 해당될 경우로 한정 한다. ② (현행과 같음)
제6조(보상금의 청구) ① 보상금의 <u>청구</u> 저 <u>자</u> 는 다음과 같다. 1. (생 략) 2.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,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: 본인이나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이내,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<u>청구자</u> 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.	제6조(보상금의 청구) ① <u>청</u> 구권자 1. (현행과 같음) 2 <u>본인 또는 해당 도의회</u> 의원 ② <u>청구권</u> 자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보상금 지급방법) ① 보상금은 일	제8조(보상금 지급방법) ①
시불로 지급하며, 청구자가 요구한	계좌
<u>구좌</u> 에 입금 한다.	
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	2
에는 청구자와 <u>의장</u> 에게 그 내용을	<u>도의</u>
통보한다.	<u>회의장</u>
제9조(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)	제9조(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	2
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행정부지사	
가 되고 위원 중 1명은 충청북도 기	
획관리실장이 되며 나머지 3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	
중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	사람
1. 의회의원 중 1명	1. 도의회의원
2. 의무직 공무원이나 지방공사청주	2 <u>충</u> 청북도 청주 ·
· 충주의료원장 중 1명	충주의료원장
3.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	3
는 <u>자</u> 1명	사람
③ 제2항제1호에 따라 <u>의회의원</u> 을 위	③ 도의회의원
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<u>의회</u>	
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	충청북도의회의
제10조(심의회 기능) 심의회는 다음 <u>사</u>	제10조(심의회 기능) <u>각</u>
<u>항을 심의한다</u> .	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심의회 위원의 임기) <u>위원의 임</u> 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도지사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하거나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 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 다.	제11조(심의회 위원의 임기) <u>위원의 임</u> 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면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제12조(심의회 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 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 무를 <u>통할 한다</u> . ② 위원장이 <u>사고가 있을 때에는</u> 위 원장이 <u>지명하는</u>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	제12조(심의회 위원장의 직무) ①
제13조(심의회 회의) ①·② (생 략)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<u>의거</u> 도 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	제13조(심의회 회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따라</u>
제14조(심의회의 간사) ① (생 략) ② 간사는 <u>도</u> 정책기획관으로 한다.	제14조(심의회의 간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충청북도</u>
제15조(심의회의 수당등) 심의회에 참 석하는 <u>위원에 대하여는 「충청북도</u> <u>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</u>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	제15조(심의회의 수당등)

참 해	게져아
102	/11.0 년
_ 점 제 호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처리기간	접 제호외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처리기간수15일
) 당대상 성명 전민등록 변 총	보상대상
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	상 명 번 등 후
» = = = = = = = = = = = = = = = = = = =	주 소 □□□□□ 전화번호
청 구 자 청구내용	정구자 정구자용 디사망 디장막 디상화
보상금수	- 01
그 67 기계 기계 <u>구좌</u> 번호	금 영 근행 계좌 번호
中	r本
상 병 장 소 상병년월일시	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
아琚연인 뭐	때 60 성 선 64 선 64 선 64 선 64 선
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	「중정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」 제6조의 규정에 따라
	위와 같이 청구합니다.
위와같이 정구합니다. 년 왕 의	ᅄᆇ
Ų	청구인 (인장 또는 서명)
정구인 (인상 또는 서명)	첨부서류
사망의 경우 :	 사망의 경우 : 사망자 기족관계증명서 1부, 사망진단서 1부,
2. 상애와 상해의 경우 : 상병 경위서 1부, 상해진단서 1부.	
	2. 장애와 상해의 경우 : 상병 경위서 1부, 병원진단서 1부(장애의 경우 장애진단서 1부)
3. 정구인의 육상사관 1루(사망/상막/상태 광광)	본인의 위임장(대리인 경우)
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.	3.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(사망장애·상해 공통)
	위의 사람은 「지방자치법 제34조」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.
#2	
충생부도 의회의장 직인	UJQ.
충청북도지사 귀하	는 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
	충청북도지사 귀하

[별지 제2호서식]

충청북도지사 귀			정에 <u>외하여</u>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	충정북도의회의	심 의 결 과 〈심의위원	다 보 설계 전 (설계 전 이 전 (전 (전) 전 (전) (전)	사망·장애 ·상해 사실 여부 및 상태 등 경위 조사 내용	구내용 미	보상대상의원 성 명	- LA - 스타 	
	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	다도 제약	이 심익결과를 통보합니다.	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예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	원 서명〉	⇒ ○청		ㅁ 사망 ㅁ 장애 ㅁ 상해	면 수민 이디아 카메	외 뭗 상 혜 등 모 상 금 청 구 심 외 결 과 추리기간 즉시	rs os
충청북도지사 귀하	총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	면 盤	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.	「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」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	심 의 결 과 〈심의위원 서명〉	심 의 회 〈결 정〉	사망장애 상해 사실 여부 및 상태 다 경위 조사	보 상 금 □ 사망 □ 장애 □ 상해 청구내용	보상대상의원 성 명	집 제 호 의원상해등모상금청구심의결과	18th

관계법령 발췌

- □ **지방자치법** [시행 2017.7.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7.26., 타법개정]
- 제34조(상해·사망 등의 보상) ①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(제61조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)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제61조(위원회의 개회)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. ②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.
- □ 지방자치법 시행령[시행 2018.10.30.] [대통령령 제29261호, 2018.10.30., 일부개정]
- 제35조(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)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범위에 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.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,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
 - 1. 직무로 인한 사망, 직무상 상해·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
 - : 시·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
 - 2.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
 - : 시·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
 - 3.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
 - : 치료비 전액. 다만,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.

-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직무로 인한 상해·사망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(이하 "보상심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- ③ 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시·도의 경우에는 부시장이나 부지사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·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- 1. 해당 지방의회 의원 1명
- 2.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
- 3. 의무직공무원 1명
- 4.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
- ④ 법 제34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.
- ⑤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⑥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공무원 재해보상법

제3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5. "유족"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가. 배우자(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,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 - 나. 자녀(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,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. 이하 같다)
 - 다. 부모(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
 - 라. 손자녀(孫子女,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,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. 이하 같다)
 - 마. 조부모(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

- □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[시행 2018.9.21.] [대통령령 제29180호, 2018.9.18., 제정]
- 제5조(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) ①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- 1.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
 - 2.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
 - 3. 그 밖에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②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- 제40조(장해 상태의 정도 구분) ①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"이란 별표 3에 따른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(이란 "장해등급"이라 한다)을 말하며, 장해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에 규정된 장해 상태에 준하여 그 장해등급을 정한다. 다만, 법 제31조에 따라 제2급부터 제10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(重)한 장해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해등급을 정한 후 별표 4에 따라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한다.
 - ② 장해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